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차 없는 날 운영, 자동차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운전

확산운동 전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마.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사.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충청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08), 광주('09), 인천('10), 경북('18)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임.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등 도지사와 사업자 그리고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음.

- 안 제6조는 환경부 권고사항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17년 예산으로 용역 실시 중에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칭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08), 광주(‘13), 충남(‘15), 인천(‘17)에서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9. 21.~‘18. 9.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충청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